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274 취.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재단법인 [redacted]재단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5. 13.

주 문

1.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불교 양우회의 재산을 취득,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인이다.

나. 원고는 2007. 7. 2.경 아래 매수부동산 및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 외 [redacted]필지 845,400㎡ 및 그 지상 주택 [redacted]동 183.8㎡(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매수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토지는 그 지번별로 '[redacted]리 ○'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7. 7. 10. 매수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수부동산을 종교단체의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0. 3. 30.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에 따라 매수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라. 피고는 토지 현황조사를 거친 후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매수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부동산 중 공표각, 조립식 건물, 비닐하우스 및 종무소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제외한 11필지 841,48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 합계 47,917,430원(= 취득세 20,959,080원 + 농어촌특별세 2,095,880원 + 등록세 20,959,080원 + 지방교육세 3,903,3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 매수부동산 및 과세내역]

주소	지번	지목	면적(㎡)	과세여부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58	하천	764	과세
	59	하천	1,187	과세
	61	하천	493	과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62	하천	69	과세
	63	임야	605	과세
	65	대(전)	470	비과세(종무소)
	위 지상	주택(슬라브)	98	비과세
	위 지상	주택(통나무)	85	비과세
	66	하천	1,779	비과세(비닐하우스)
	67	하천	251	비과세(공표각)
	68	하천	281	비과세(공표각)
	70	하천	1,134	비과세(임시법당조립식건물)
	산70	임야	835,636	과세
	산70-1	임야	496	과세
	71	하천	1,554	과세
	72	하천	291	과세
	103	하천	264	과세
	104	하천	126	과세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1, 4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매수부동산 지상에 총본산 삼방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반공사와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도 보수, 광장 조성 등을 거쳐 각종 법회, 참선, 포행, 명상의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redacted]리 [redacted] 산[redacted] 지상에 복합대법당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21개동의 총본산을 건립하기 위하여 매수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약 20여 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원고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반공사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바, 원고가 3년 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redacted]사는 [redacted]사 사찰이 위치한 대지는 물론 사찰의 배후에 있는 산지에 관하여도 모두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매수부동산의 취득 목적

원고는 2007. 3. 18. 임시이사회에서 불사 본부를 더 많은 신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수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2) 법령상 장애사유의 해결

매수부동산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redacted]리 [redacted]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직후 휴양림 지정해제 신청을 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2007. 12. 3. 휴양림 지정이 해제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토지를 임업용 산지로 변경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측의 관내 전체지역에 대한 필지별 확인 작업과 산지이용 구분 작업, 상급기관에의 요청을 거쳐 2009. 6.경에야 임업용 산지로의 변경 지정이 이루어졌다.

3) 기반공사 등의 진행 경과

가) 원고는 매수부동산 취득 직후 2007. 8.경 매수부동산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 건물 등을 철거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2007. 12.경부터 기반공사로서 진입로 확포장, 교량 신축 및 확장 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208. 7. 17. 가천리 59, 66 내에 지하수 관정을 준공하였다. 또한 원고는 208. 4.경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매수부동산 내의 임도를 보수하여 포행(천천히 걸으며 명상하는 수행법)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도에 참선을 위한 평상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나) 매수부동산 인근에는 가천리 1124 국유하천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 하천이 범람하여 매수부동산 일대에 침수 피해 발생이 예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8. 2. 12. 피고로부터 비관리청 제방공사를 목적으로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얻어 2011. 2. 10.까지 하천을 점용하면서 제방공사와 석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redacted]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사방댐 설치를 요구하여 위 연구소에서 2009. 8.경 [redacted]리 [redacted]에 사방댐 2기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4) 주변 토지주들의 교통방해

원고가 위와 같이 기반공사를 진행하자, 인근 토지인 A의 소유자는 2008. 3.경부터 매수부동산에 진입하는 도로인 [redacted]의 [redacted] 지상에 약 2m 높이의 폐기물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고, [redacted]리 [redacted]의 소유자가 포크레인으로 도로를 파헤쳐 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년경까지 민원제기, 형사고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해결하였다.

5) 기본계획의 수립 등

원고는 2009. 4. 28. 주식회사 [redacted]솔루션과 [redacted]불교 양우회 본사인 삼방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7. 말경 매수부동산 일대에 2020년까지 불교문화시설 6개동, 휴양문화시설 4개동, 불교체험시설 3개동, 숙박시설 3개동 및 조경시설, 편의시설, 녹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승불교 양우회 총본산 삼방사를 건립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다만 2009. 10. 22. 임도(진입로)의 도로전용 문제, 산지전용허가 취득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신축 건물 위치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았다.

6) 공표각 및 임시법당의 신축 등

원고는 2009. 6. 23. 가천리 67, 68 지상에 소법당 청동기와 지붕 공표각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0. 9. 6., 2011. 9. 3. 건축변경신고를 거쳐 2011. 12. 30. 소법당(종교집회장) 신축을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1년경까지 [redacted]리 [redacted]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목조건물을 법당으로 개조하고, 가천리 70 지상에 조립식 임시법당을 설치하는 한편, 매수부동산 일대에서 석가탄신일 법회, 임도 경행, 해탈선법 등의 종교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7) 대법당 신축 절차의 진행

가) 원고는 위 5)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신축 건물의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는 자문에 따라 [redacted]리[redacted] 지상에 설치한 임시법당을 철거하고, [redacted]리 [redacted] 산[redacted] 및 원고의 이사장 소유의 [redacted]리 [redacted] 지상에 대법당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2012. 1. 28. 주식회사 [redacted]와 사이에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서류 작성을 위한 용역계약을, B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건축물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고, 인허가 및 협의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12. 7. 20. 완주군 소재 C건축사사무소와 추가로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5층 2,974.90㎡ 규모의 대법당 설계를 마치고 2013. 2. 18.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4. 6. 11.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4. 9. 24. [redacted]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 10. 6. 대법당 착공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40, 43 내지 5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edacted]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491 판결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취지,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1997. 10. 1. 개정 전·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의 문언의 내용과 그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 제5장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와 같은 규정이 없는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총본산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기반공사 등을 시행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뿐이고(공표각 및 임시법당이 신축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일부를 석가탄신일 법회, 임도 경행, 해탈선법 등의 종교행사 진행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총본산 건축 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행사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이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사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에게 귀책될 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97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후 그에 대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 및 등기한 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로부터 3년 내에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매수부동산 지상에 16개동 이상의 건물과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 [redacted]불교 양우회 총본산을 건립하고자 하였는바, 이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대규모 공사이고, 매수부동산의 총 면적 또한 매우 넓어 모든 토지상에 건물 신축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 및 건축물별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매수부동산을 취득한 직후부터 토목공사, 인근 하천 정비공사, 개발계획의 수립 및 각종 용역계약의 체결, 일부 법당 건물의 신축 등 총본산 건립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꾸준히 진행하여 왔고, 현재에도 그 건립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③ 원고는 [redacted]리 [redacted]을 취득할 당시부터 위 토지가 휴양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사용에 법령상의 장애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취득 즉시 휴양림 지정해제 신청 및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등 그러한 법령상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다만 행정청에서 그 신청을 처리하는데 있어 다소 장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반공사 진행 중 장기간에 걸쳐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교통방해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사정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총본산 건립 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상당 부분은 녹지로 남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완공 후 총본산의 규모와 예상되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교문화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변 토지 또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창현

판사 임경옥

판사 강인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처분일자	과세대상 (완주군 소재)	세목	금액(원)
2012. 12. 11.	[redacted](하천764㎡), (하천1,187㎡)	등록세	4,706,190
		지방교육세	876,460
2012. 12. 11.	[redacted](하천493㎡) 외 6필지	등록세	6,863,280
		지방교육세	1,278,210
2012. 12. 11.	[redacted](임야835,636㎡)	등록세	9,302,400
		지방교육세	1,732,480
2012. 12. 11.	[redacted](임야496㎡)	등록세	87,210
		지방교육세	16,240
2012. 12. 11.	[redacted](하천764㎡), (하천1,187㎡)	취득세	4,706,190
		농특세	470,600
2012. 12. 11.	[redacted](하천493㎡) 외 6필지	취득세	6,863,280
		농특세	686,320
2012. 12. 11.	[redacted](임야835,636㎡)	취득세	9,302,400
		농특세	930,240
2012. 12. 11.	[redacted](임야496㎡)	취득세	87,210
		농특세	8,7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3

별지2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0.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끝.